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7. 9. 9.

행정재무위원회

##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8월 25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7년 8월 26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7. 9. 5)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조남성)

- 가. 제안이유
  - 농지법 및 대마관리법에 의한 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중 일부를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별표] 위임사무중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함
    - 17.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가.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 나.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
      - 다. 농지자경증명 발급
    - 18. 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가. 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 나. 대마취급자허가증 재교부
      - 다. 대마채배자 및 연구자의 보고
      - 라. 대마의 폐기 등
      - 마. 대마의 사고보고
      - 바. 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신고
      - 사. 대마취급자격상실자 등의 대마처리
      - 아. 검사와 수거
      - 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 차. 청문
      - 카. 대마감시원
      - 타. 몰수대마폐기

##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전문위원 : 허영훈)

동 조례(안)의 개정은 제명중 “행정권한”을 “사무”로 개정하는 것은 내부부의 사무위임 관련조례와 규칙정비지침에 의거 현재 자치단체별로 사무위임 자치법규의 명칭을 혼용함으로써 초래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중인 자치법규의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지시행법 제51조제4항에 의거 농업인의 거주지 변경시 주민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동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업무의 특성상 전문분야의 보건소장에게 대마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 4. 審査結果: 원 안 의 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3
----------	-----

제출년월일 : 1997. 8. 2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농지법 및 대마관리법에 의한 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중 일부를 동장 및 보건소장에  
게 권한위임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2. 주요골자

[별표] 위임사무중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함

17.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가.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 나.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
- 다. 농지자경증명 발급

18. 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가. 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 나. 대마취급자허가증 재교부
- 다. 대마재배자 및 연구자의 보고
- 라. 대마의 폐기 등
- 마. 대마의 사고보고
- 바. 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 신고
- 사. 대마취급자격상실자 등의 대마처리
- 아. 검사와 수거
- 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 차. 청문
- 카. 대마감시원
- 타. 몰수대마 폐기

## 3. 참고사항

- 가. 관련사항
  - 농지법 제8조, 제52조
  - 대마관리법 제5조 내지 제15조, 제23조
- 나. 합의사항
- 다. 예산조치
- 라. 조례(안) : 별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행정권한”을 “사무”로 한다.

제5조1항 [별표] 위임사무중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17.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나.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  다. 농지자경증명 발급</p> <p>18. 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나. 대마취급자허가증 재교부  다. 대마제배자 및 연구자의 보고  라. 대마의 폐기등  마. 대마의 사고보고  바. 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 신고  사. 대마취급자격상실자 등의 대마처리  아. 검사와 수거  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차. 청문  카. 대마감시원  다. 몰수대마 폐기</p>	<p>농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농지법 제5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농지법 제5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4조</p> <p>대마관리법 제5조</p> <p>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제8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14조의2  동법 제15조  동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7조</p>	<p>동 장</p> <p>보건소장</p>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권한위임조례</p> <p>본문(생략) 제1호 내지 제16호(생략)</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p> <p>본문(현행과 같음) 제1호 내지 제16호(현행과 같음)</p>								
<p>(신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vertical-align: top;"> <p><u>17. 농지관리에 관한</u> <u>다음의 사무</u></p> <p><u>가.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u></p> <p><u>나.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u></p> <p><u>다. 농지자경증 발급</u></p> </td> <td style="width: 40%; vertical-align: top;"> <p>농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p> <p>농지법 제52조제1항</p> <p>동법시행규칙 제53조</p> <p>농지법 제5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4조</p> </td> <td style="width: 30%; 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p>동 장</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신설)</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vertical-align: top;"> <p><u>18. 대마관리에 관한</u> <u>다음의 사무</u></p> <p><u>가. 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u></p> <p><u>나. 대마취급자 허가증 재교부</u></p> <p><u>다. 대마재배자 및 연구자의 보고</u></p> <p><u>라. 대마의 폐기 등</u></p> <p><u>마. 대마의 사고보고</u></p> <p><u>바. 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 신고</u></p> <p><u>사. 대마취급자격상실자등의 대마처리</u></p> <p><u>아. 검사와 수거</u></p> <p><u>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등</u></p> <p><u>차. 첩문</u></p> <p><u>카. 대마감시원</u></p> <p><u>타. 물수대마 폐기</u></p> </td> <td style="width: 40%; vertical-align: top;"> <p>대마관리법 제5조</p> <p>동법 제6조</p> <p>동법 제7조, 제8조</p> <p>동법 제9조</p> <p>동법 제10조</p> <p>동법 제11조</p> <p>동법 제12조</p> <p>동법 제13조</p> <p>동법 제14조</p> <p>동법 제14조의2</p> <p>동법 제15조</p> <p>동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7조</p> </td> <td style="width: 30%; 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p>보건소장</p> </td> </tr> </table> </td> </tr> </table>	<p><u>17. 농지관리에 관한</u> <u>다음의 사무</u></p> <p><u>가.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u></p> <p><u>나.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u></p> <p><u>다. 농지자경증 발급</u></p>	<p>농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p> <p>농지법 제52조제1항</p> <p>동법시행규칙 제53조</p> <p>농지법 제5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4조</p>	<p>동 장</p>	<p>(신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vertical-align: top;"> <p><u>18. 대마관리에 관한</u> <u>다음의 사무</u></p> <p><u>가. 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u></p> <p><u>나. 대마취급자 허가증 재교부</u></p> <p><u>다. 대마재배자 및 연구자의 보고</u></p> <p><u>라. 대마의 폐기 등</u></p> <p><u>마. 대마의 사고보고</u></p> <p><u>바. 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 신고</u></p> <p><u>사. 대마취급자격상실자등의 대마처리</u></p> <p><u>아. 검사와 수거</u></p> <p><u>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등</u></p> <p><u>차. 첩문</u></p> <p><u>카. 대마감시원</u></p> <p><u>타. 물수대마 폐기</u></p> </td> <td style="width: 40%; vertical-align: top;"> <p>대마관리법 제5조</p> <p>동법 제6조</p> <p>동법 제7조, 제8조</p> <p>동법 제9조</p> <p>동법 제10조</p> <p>동법 제11조</p> <p>동법 제12조</p> <p>동법 제13조</p> <p>동법 제14조</p> <p>동법 제14조의2</p> <p>동법 제15조</p> <p>동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7조</p> </td> <td style="width: 30%; 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p>보건소장</p> </td> </tr> </table>	<p><u>18. 대마관리에 관한</u> <u>다음의 사무</u></p> <p><u>가. 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u></p> <p><u>나. 대마취급자 허가증 재교부</u></p> <p><u>다. 대마재배자 및 연구자의 보고</u></p> <p><u>라. 대마의 폐기 등</u></p> <p><u>마. 대마의 사고보고</u></p> <p><u>바. 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 신고</u></p> <p><u>사. 대마취급자격상실자등의 대마처리</u></p> <p><u>아. 검사와 수거</u></p> <p><u>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등</u></p> <p><u>차. 첩문</u></p> <p><u>카. 대마감시원</u></p> <p><u>타. 물수대마 폐기</u></p>	<p>대마관리법 제5조</p> <p>동법 제6조</p> <p>동법 제7조, 제8조</p> <p>동법 제9조</p> <p>동법 제10조</p> <p>동법 제11조</p> <p>동법 제12조</p> <p>동법 제13조</p> <p>동법 제14조</p> <p>동법 제14조의2</p> <p>동법 제15조</p> <p>동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7조</p>	<p>보건소장</p>
<p><u>17. 농지관리에 관한</u> <u>다음의 사무</u></p> <p><u>가.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u></p> <p><u>나.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u></p> <p><u>다. 농지자경증 발급</u></p>	<p>농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p> <p>농지법 제52조제1항</p> <p>동법시행규칙 제53조</p> <p>농지법 제5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4조</p>	<p>동 장</p>							
<p>(신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vertical-align: top;"> <p><u>18. 대마관리에 관한</u> <u>다음의 사무</u></p> <p><u>가. 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u></p> <p><u>나. 대마취급자 허가증 재교부</u></p> <p><u>다. 대마재배자 및 연구자의 보고</u></p> <p><u>라. 대마의 폐기 등</u></p> <p><u>마. 대마의 사고보고</u></p> <p><u>바. 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 신고</u></p> <p><u>사. 대마취급자격상실자등의 대마처리</u></p> <p><u>아. 검사와 수거</u></p> <p><u>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등</u></p> <p><u>차. 첩문</u></p> <p><u>카. 대마감시원</u></p> <p><u>타. 물수대마 폐기</u></p> </td> <td style="width: 40%; vertical-align: top;"> <p>대마관리법 제5조</p> <p>동법 제6조</p> <p>동법 제7조, 제8조</p> <p>동법 제9조</p> <p>동법 제10조</p> <p>동법 제11조</p> <p>동법 제12조</p> <p>동법 제13조</p> <p>동법 제14조</p> <p>동법 제14조의2</p> <p>동법 제15조</p> <p>동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7조</p> </td> <td style="width: 30%; 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p>보건소장</p> </td> </tr> </table>	<p><u>18. 대마관리에 관한</u> <u>다음의 사무</u></p> <p><u>가. 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u></p> <p><u>나. 대마취급자 허가증 재교부</u></p> <p><u>다. 대마재배자 및 연구자의 보고</u></p> <p><u>라. 대마의 폐기 등</u></p> <p><u>마. 대마의 사고보고</u></p> <p><u>바. 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 신고</u></p> <p><u>사. 대마취급자격상실자등의 대마처리</u></p> <p><u>아. 검사와 수거</u></p> <p><u>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등</u></p> <p><u>차. 첩문</u></p> <p><u>카. 대마감시원</u></p> <p><u>타. 물수대마 폐기</u></p>	<p>대마관리법 제5조</p> <p>동법 제6조</p> <p>동법 제7조, 제8조</p> <p>동법 제9조</p> <p>동법 제10조</p> <p>동법 제11조</p> <p>동법 제12조</p> <p>동법 제13조</p> <p>동법 제14조</p> <p>동법 제14조의2</p> <p>동법 제15조</p> <p>동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7조</p>	<p>보건소장</p>					
<p><u>18. 대마관리에 관한</u> <u>다음의 사무</u></p> <p><u>가. 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u></p> <p><u>나. 대마취급자 허가증 재교부</u></p> <p><u>다. 대마재배자 및 연구자의 보고</u></p> <p><u>라. 대마의 폐기 등</u></p> <p><u>마. 대마의 사고보고</u></p> <p><u>바. 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 신고</u></p> <p><u>사. 대마취급자격상실자등의 대마처리</u></p> <p><u>아. 검사와 수거</u></p> <p><u>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등</u></p> <p><u>차. 첩문</u></p> <p><u>카. 대마감시원</u></p> <p><u>타. 물수대마 폐기</u></p>	<p>대마관리법 제5조</p> <p>동법 제6조</p> <p>동법 제7조, 제8조</p> <p>동법 제9조</p> <p>동법 제10조</p> <p>동법 제11조</p> <p>동법 제12조</p> <p>동법 제13조</p> <p>동법 제14조</p> <p>동법 제14조의2</p> <p>동법 제15조</p> <p>동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7조</p>	<p>보건소장</p>							